

■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[별표 2] <개정 2023. 11. 21.>

해양경찰학 전공 이수로 인정될 수 있는 과목(제16조제3항제3호나목 관련)

인 정 과 목
해양경찰학개론, 형법, 형사소송법, 행정법, 행정학, 국제법, 해사법규, 해양경찰 경무론, 해양경비론, 해양안전론, 해양수사(외사를 포함한다)론, 해양정보론, 해 양치안정책론, 해양오염방제론, 선박운용론, 해양경찰영어, 해사영어, 선박일반 (항해·기관), 내연기관, 보조기계, 수산법규, 수산학개론, 어구·어법·어로학, 어장학, 인명구조학(수영을 포함한다), 전기전자, 전파통신공학, 무도학(체포술 을 포함한다), 해양법, 헌법, 항해학, 수색구조론, 해상교통관제론, 항해실습, 기 관실습, 해양경찰법제, 범죄학, 해양기상학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 업무 와 관련된 과목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

비고

각 과목당 인정학점의 상한은 6학점으로 한다.